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최종개정 2026.1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인사규정의 시행에 있어 명지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02.6.17.)

제1조의2(교원의 구분) ①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와 강사 및 그 밖의 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신설 2009.3.1., 변경 2019.8.1.)

②전임교원은 일반교원과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세부구분은 다음과 같다.(변경 2017.3.1.)

1.일반교원 :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2.특별교원(변경 2017.3.1.)

가.교양교수 : 교양과목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나.연구전담교수 :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다.전문교수 : 정부,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로서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변경 2010.4.1)

라.회화전담교수 : 외국어 회화를 전담하는 교원

마.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신설 2012.4.1.)

바.교육중점교수 :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신설 2014.10.1., 변경 2026.1.1.)

사.HK교수 :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 선정된 우리 대학교 소속 연구소(단)에서 연구를 전담하여 교원(신설 2016.12.1.)

③강사는 교과목에 관한 학생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중심의 교원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전임강사, 겸임강사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내용신설 2019.8.1.)

④비전임교원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교수, 특임교수로 구분한다.(변경 2012.7.1., 2016.12.1., 2017.3.1., 호번호변경 2019.8.1.)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단서추가 2001.9.1, 변경 2003.11.1., 2009.3.1., 2017.3.1)

②강사와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변경 1997.3.1, 1999.7.1, 2001.9.1, 2002.6.17., 2009.3.1., 2019.8.1.)

제3조(발령일자 소급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삭제 2017.5.1.)

3.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4조(임용기간) ①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승진 임용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1.일반교원(변경 1998.3.1, 2009.3.1, 2010.4.1, 2010.9.1)

가.교수 :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변경 2012.7.1)

다.(삭제 2010.9.1)

라.(삭제 2010.9.1)

2.특별교원(교양교수, 연구전담교수, 전문교수, 회화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육중점교수, HK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변경 1998.3.1, 2009.3.1, 2010.4.1, 2010.9.1, 2012.4.1.,2017.3.1.,2018.6.1.)

가.(삭제 2010.9.1)

나.(삭제 2010.9.1)

다.(삭제 2010.9.1)

라.(삭제 2010.9.1)

3.(삭제 2009.3.1)

4.(삭제 2009.3.1)

②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교원 임용심사를 통하여 제18조 제2항의 기간 이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98.3.1, 변경 2000.3.1., 2010.9.1., 2018.6.1., 2026.10.1.)

③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의한다.(변경 1998.3.1.)

④재계약 및 승진임용시 예정되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을 계약기간만료일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제5조(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퇴직일은 정년 해당학기의 말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미래교육원장포함)과 교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 2000.9.1, 2002.6.17. 2004.3.2., 2005.8.1., 2020.3.1.)

②10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이 정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제 2 장 신규임용

제6조(자격)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이 정하는 교원 자격이 있는 자.(변경 1999.7.1., 2017.5.1)

2.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변경 1998.3.1., 2017.5.1., 2024.11.1.)

3.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신설 2024.11.1.)

가.학위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특수한 분야, 외국어 회화 등 실기·실습을 위주로 하는 분야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분야는 학사학위 소지자(신설 2024.11.1.)

나.예체능계 및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또는 예능보유자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우수한 자(신설 2024.11.1.)

4.교육공무원법상 자격인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변경 2002.6.17., 2012.3.1., 2017.5.1. 호번호 변경 2024.11.1.)

5.(신설 1998.3.1, 2002.9.1, 삭제 2012.3.1., 호번호 변경 2024.11.1.)

제7조(직급) (조명 변경 2017.5.1.) ①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하되,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감안하여 부교수 이상의 상위직을 부여할 수 있다. (변경 2017.5.1.)

②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대학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의 직급에서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하며, 타 대학에 근무하다가 우리 대학교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도 같다.

제8조(임용원칙) (조명 변경 2017.5.1.)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매학기 초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절차 및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변경 2017.5.1.)

②(삭제 2017.5.1.)

③(신설 2002.9.1, 2006.9.1., 2009.3.1., 변경 2013.10.1., 삭제 2017.5.1.))

제9조(임용계약) 신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변경 1999.12.1, 2003.11.1)

1.근무기간 :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신설 2003.11.1, 2009.3.1)

2.급여 : 법인 보수규정 및 우리 대학교 보수규칙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급여(신설 2003.11.1)

3.근무조건 : 강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1)

4.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1)

5.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 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1)

6.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3.11.1.)

제10조 (삭제 2017.5.1.)

제11조 (삭제 2017.5.1.)

제12조(임용의 취소·변경) 신규임용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한다. 또한, 학·경력조회 결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변경 2017.5.1.)

제12조의2 (삭제 2017.5.1)

제 3 장 승진

제13조(직급별 정원 관리) 총장은 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실정에 맞추어 직급별로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자격·요건) ①정년보장교수를 제외한 교원의 승진은 법인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현 직급에서 최소한 아래의 기간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가 없는 자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 최저 소요년수는 8년으로 한다.(변경 2013.11.1)

1.조 교 수→부교수 : 4년(호번호 변경 2012.7.1)

2.부 교 수→교 수 : 5년(호번호 변경 2012.7.1)

3.(삭제 2012.7.1)

②승진 소요년수 산정에 있어 우리 대학교에서 최소 2년이상(임용심사가 진행되는 학기 포함) 재직해야만 타 대학의 재직년수를 합산,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변경 2007.11.1., 2011.9.1., 2021.1.1.)

③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제외한 일반교원의 승진은 소요기간 내에 별표2와 같은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교원은 별도로 정한다.(변경 1998.3.1, 2002.6.17, 2007.3.1., 2010.9.1., 2017.3.1)

1.(삭제 2007.3.1)

2.(삭제 2007.3.1)

가.(삭제 2007.3.1)

나.(삭제 2007.3.1)

④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승진 제한) ①다음의 교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1.징계 심리 중에 있거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경우

2.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3.법인 인사규정 제25조에 의거 휴직중인 교원

②(삭제2001.9.1)

③(신설2000.9.1, 변경 2007.3.1, 2008.4.1, 삭제 2011.3.1.)

제16조(임용·심사절차) 총장은 매 학기 승진임용(계약제 포함) 대상자 중 승진심사를 요청하는 교원에 대하여 교수업적 평가결과, 연구실적평가 및 교원 승진임용(계약제 포함) 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변경1998.3.1, 2002.6.17, 2007.3.1, 2008.4.1, 2009.3.1)

1.교수업적 평가: 교육지원처장은 승진 대상자의 임용기간내의 교수업적평정표를 작성하고, 교수성과위원회에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심사한다.(변경2002.6.17, 2007.3.1, 2008.4.1)

2.교원 승진임용(계약제 포함) 심사(신설 1998.3.1, 변경 2007.3.1, 2008.4.1)

가.학부·학과·전공 심사 : 승진임용 대상자보다 상위직급의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 (부득이한 경우 단과대학장이 위촉한 상위직급의 교원)를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교원 5 ~ 10인으로 구성된 학부·학과·전공 교원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적격에 대한 찬반을 의결하고, 회의록과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교원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심사대상자를 제외한 교원의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이 위촉한 교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심사임용대상자보다 하위직급의 교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신설 1998.3.1, 변경 1999.7.1, 2008.4.1., 2009.3.1., 2025.3.1.)

나.단과대학교원심사 : 단과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교수 5 ~ 10인으로 단과대학장이 구성한 단과대학교원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적격에 대한 찬반을 의결하고, 회의록과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부교원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학부·학과·전공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 승진임용 심사는 해당 교육부서장(특수대학원장, 방목기초교육대학장 등)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정교수 5 ~ 10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신설 1998.3.1, 변경1999.7.1, 2002.6.17, 2008.4.1., 2009.3.1., 2021.1.1., 2025.3.1.)

다.본부교원심사 : 교육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교수 10인 내외로 총장이 구성한 본부교원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적격에 대한 찬반을 의결하고, 회의록과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신설1998.3.1, 2008.4.1, 2009.3.1)

라.각 심사단계에서 승진임용 적격에 대한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상위심사위원회는 하위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 후에도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적인 적격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9.3.1)

마.교원 승진임용 심사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일반교원은 별지서식1과 같고 특별교원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9.3.1, 변경 2012.4.1., 2016.10.1., 2017.3.1)

3.의견 진술 및 제출 기회부여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임용 대상 교원에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변경 1998.3.1, 2007.3.1, 2011.9.1)

4.(삭제 2007.3.1.)

제17조(승진시기) 교원의 승진은 매 학년도 3월과 9월에 행한다.(변경 2010.10.1)

제 4 장 재계약임용(변경 2009.3.1)

제18조(원칙·요건) ①교원의 능력 향상과 교육 및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용기간 내의 교수업적을 엄격히 심사평정하여 재계약한다.(변경 2012.4.1)

②전임교원의 재계약 기간은 다음 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11.1, 변경 2009.3.1., 2010.9.1., 2018.6.1)

1.일반교원(변경 1998.3.1, 2009.3.1, 2010.9.1)

가.부교수 : 5년

나.조교수 : 3년

다.(삭제 2012.7.1)

2.특별교원(변경1998.3.1, 2009.3.1, 2010.4.1, 2010.9.1., 2012.1.1., 2017.3.1)

가.교양교수: 3년부터 5년

나.연구전담교수: 3년

다.전문교수: 3년

라.회화전담교수: 3년 이내

마.산학협력중점교수 : 2년(신설 2012.4.1.)

바.교육중점교수 : 3년 이내(신설 2014.10.1., 변경 2026.1.1.)

사.HK교수 : 3년부터 5년(신설 2018.6.1.)

3.(삭제 2009.3.1)

4.(삭제 2009.3.1)

③법인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관계법령과 제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야 한다.(변경 2002.6.17)

④일반교원의 재계약은 임용기간 내에 별표3과 같은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교원은 별도로 정한다.(변경 2002.6.17, 2007.3.1, 2010.9.1., 2012.4.1., 2017.3.1)

1.(삭제 2007.3.1)

2.(삭제 2007.3.1)

가.(삭제 2007.3.1)

나.(삭제 2007.3.1.)

제19조(임용·심사절차) 총장은 매학기 재계약 대상자에 대하여 교수업적 평가결과, 연구실적 평가 및 재계약 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변경 1998.3.1, 2002.6.17, 2007.3.1, 2008.4.1, 2009.3.1, 2012.4.1)

1.교수업적 평가 : 교육지원처장은 재계약 대상자의 임용기간내의 교수업적평정표를 작성하고, 교수성과위원회에서 제18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신설 1998.3.1, 변경 2002.6.17, 2007.3.1, 2008.4.1, 2012.4.1)

2.재계약 심사(신설 1998.3.1, 변경 2007.3.1, 2008.4.1, 2009.3.1)

가.학부·학과·전공 심사 : 재계약 대상자보다 상위직급의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부득이한 경우 단과대학장이 위촉한 상위직급의 교원)를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교원 5 ~ 10인으로 구성된 학부·학과·전공 교원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에 대한 찬반을 의결하고, 회의록과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교원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심사대상자를 제외한 교원의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이 위촉한 교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심사임용대상자보다 하위직급의 교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신설 1998.3.1, 변경1999.7.1, 2008.4.1., 2009.3.1., 2025.3.1.)

나.단과대학교원심사 : 단과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교수 5 ~ 10인으로 단과대학장이 구성된 단과대학교원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임용 적격에 대한 찬반을 의결하고, 회의록과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부교원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학부·학과·전공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 재계약 심사는 해당 교육부서장(특수대학원장, 방목기초교육대학장 등)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정교수 5 ~ 10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신설 1998.3.1, 변경 1999.7.1, 2008.4.1., 2009.3.1., 2025.3.1.)

다.본부교원심사 : 교육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교수 10인 내외로 총장이 구성한 교원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임용 적격에 대한 찬반을 의결하고, 회의록과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신설1998.3.1, 변경 2008.4.1, 2009.3.1)

라.각 심사단계에서 재계약임용 적격에 대한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상위심사위원회는 하위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 후에도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적인 적격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9.3.1)

마.교원 재계약 심사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일반교원은 별지서식8과 같고 특별교원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9.3.1, 변경 2012.4.1., 2016.10.1., 2017.3.1)

3.의견 진술 및 제출 기회부여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임용 대상 교원에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1998.3.1, 변경 2002.6.17, 2007.3.1, 2011.9.1)

4.(삭제 2007.3.1.)

제20조(임용의 제한) 임용기간 만료일 현재 휴직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장기 국외여행이 종료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재계약할 수 없다.(변경 2012.4.1.)

제21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계약은 매년 3월과 9월에 행한다.(신설 1998.3.1, 2012.4.1)

제 5 장 정년보장(신설 1998.3.1)

제22조(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법인인사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정년 보장 교원임용 심사를 위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본부교원심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1998.3.1, 변경 1999.7.1., 2015.3.1.)

제23조(자격·요건) ①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 대상자는 법인인사규정 제 12조에 따라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1998.3.1., 변경2015.3.1)

1.이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해 교수로 신규 임용된 자는 계약기간.(신설1998.3.1, 변경 2004.3.3)

2.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는 부교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신설 1998.3.1., 단서추가2001.9.1., 단서삭제 2015.3.1)

②소요년수 산정은 이 규칙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다.(신설 1998.3.1)

③정년보장 교원임용 대상자는 소요기간 내에 별표2와 같은 심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98.3.1, 변경 2002.6.17, 2007.3.1)

1.(삭제 2007.3.1)

2.(삭제 2007.3.1)

가.(삭제 2007.3.1)

나.(삭제 2007.3.1)

④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14조 제4항을 적용한다.(신설 1998.3.1.)

제24조(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수) ①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비율은 대학전체 법정정원 (편제정원기준)의 100분의 35이내로 한다.(변경 2011.1.1)
②정수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8.3.1 변경 2011.1.1)
③(신설 1998.3.1, 삭제 2011.1.1.)

제25조(정년보장 제한)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는 이 규칙 제15조를 적용한다.(신설 1998.3.1.)

제26조(임용심사절차) 총장은 매학기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임용 예정일 2개월 전에 본부교원심사위원회에서 교수업적 평가결과,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를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신설 1998.3.1, 변경 1999.7.1, 2002.6.17., 2007.3.1., 2015.3.1)
1.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16조 제1호를 적용한다.(신설 1998.3.1, 변경 2002.6.17, 2007.3.1)
2.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16조 제2호와 교원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8.3.1, 변경 1999.7.1, 2007.3.1)
3.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소명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16조 제4호를 적용한다. 다만, 교수로 신규 임용된 자가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용만료일 2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한다.(신설1998.3.1, 단서신설 2002.6.17, 변경 2007.3.1)
4.(삭제 2007.3.1.)

제27조(정년보장 시기) 교원의 정년보장은 매년 3월과 9월에 행한다. (신설 1998.3.1., 단서삭제 2015.3.1.)

제27조의2(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일반교원 중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는 (별표4) 교수 연구영역 최소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신설 2015.3.1.)

제 6 장 보직(변경 1998.3.1)

제28조(보임) ①모든 보직의 임용은 법인인사규정 제9조(보직)에 의한다.(변경1998.2.1, 1998.3.1, 2000.9.1, 2005.9.1)
②보임일자는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 보임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5.9.1, 2009.3.1)

제 7 장 겸직제한, 소속 및 소속 변경, 겸소속 (변경 1998.3.1., 2007.7.1., 2014.1.1., 2024.6.17.)

제29조(겸직금지) (변경 1998.3.1., 2012.3.1) ①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18.9.1.)

1. 국가 또는 공공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포함)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변경 2018.2.1.)
 2. 실험실 창업으로 인한 벤처기업 또는 교내 창업보육센터 기업의 대표자(임·직원 포함) (변경 2018.9.1.)
 3.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4.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신설 2024.11.1.)
- ②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변경 2018.9.1.)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겸직허가절차 및 조건) ① 겸직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관할청 승인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승인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1998.3.1., 2012.3.1., 2018.9.1.)

② 타 기관 겸직을 원하는 교원은 시작 1개월 전에 교육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겸직허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변경 2012.3.1., 2018.9.1.)

③(삭제 2012.3.1.)

④(변경 1999.7.1, 삭제 2012.3.1.)

⑤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겸직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겸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교원인사팀을 통하여 총장에게 익년 1월 말일까지 제출·보고하여야 한다.(항신설 2018.9.1.)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제30조의2(소속 및 소속 변경) (조신설 2014.1.1., 조명변경 2024.6.17.) ① 전임교원은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에 속한다.(변경 2024.6.17., 2025.3.1.)

② 전임교원의 소속은 단과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과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변경 2024.6.17.)

③ 소속의 변경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4.6.17.)

④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령한다.(신설 2024.6.17.)

1. 전임교원이 소속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과 변경예정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거쳐 소정의 신청서를 교육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
2. 학문 간의 융합이나 교류의 촉진 등을 위하여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지원처장은 대학(원)장과 협의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3.소속 변경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발령한다.

제30조의3(겸소속) (조번호변경 2014.1.1.) ①교육 및 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직중인 전임교원에게 원소속 이외에 교내 타소속을 겸하게 할 수 있다.(변경 2024.6.17.)

②겸소속 교원은 원소속의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령한다.(변경 2024.6.17.)

1.겸소속을 원하는 교원은 원소속과 겸소속 대학(원)장의 협의를 거쳐 소정의 신청서를 교육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9.3.1., 2024.6.17.)

2.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해 학문 간의 융합이나 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신설 2024.6.17.)

3.겸소속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발령한다.(호번호 변경 2024.6.17.)

③겸소속 교원은 겸소속의 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겸소속 단과대학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 2024.6.17.)

④(변경 2017.12.1., 삭제 2021.1.1.)

제31조(외부 출강) ①교원의 외부 출강은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얻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원중 교육중점교수의 경우에는 학기당 학점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2014.12.1., 2017.3.1. 2026.1.1.)

②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 등에는 출강할 수 없다.

제 8 장 휴직, 복직 및 퇴직(변경 1998.3.1)

제32조(휴직) ①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원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1998.3.1., 2017.5.1)

1.의병휴직은 휴직원과 종합병원의 진단서

2.법정의무를 위한 휴직은 휴직원과 법정의무의 발생 또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3.국외유학, 국제기관의 고용,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로 인한 휴직은 휴직원과 초청장 또는 고용계약서

②(삭제 2015.6.1.)

③교원의 휴직은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6.1.)

제33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변경 1998.3.1.)

제34조(휴직기간의 만료)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변경 1998.3.1.)

제35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아 자동 면직된 교원은 휴직 중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변경 1998.3.1.)

제36조(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휴직사유 소멸에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1998.3.1.)

제36조의2(성과급) (조신설 2009.3.1.) ①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실적 향상을 위하여 교원 상호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연구지원비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한다.

②성과급 제도는 매년 실시하되, 평가기간은 심사 당해 학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으로 한다.

③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의2 호봉획정 및 승급(신설 2010.9.1)

제36조의3(호봉획정 및 승급) 교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인보수규정에 의한다.

제36조의4(교원호봉심의위원회 설치) 교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호봉심의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교원의 초임 호봉 획정

2.교원의 호봉 재획정

3.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 되는 사항

제36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교육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원인사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보 칙(변경 1998.3.1)

제37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법인보수규정에 의한다.(변경 1998.3.1.)

제38조의1(상벌) 교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법인표창규정 및 법인인사규정에 의한다.(변경 1998.3.1.)

제38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교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르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3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우리 대학교 학칙, 제규정을 준용 또는 적용한다.(변경 1998.3.1, 2000.2.1, 2002.6.17)

부 칙

(시행일)이 시행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 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에 사용하던 명지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교수업적 평가 결과를 승진, 재임용 심사에 반영시 본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는 교수업적 평가제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일 전의 기간은 종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1.이 시행규칙은 1997년 9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하고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 2.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요건은 이 규칙 제1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 3.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교수로 재직 중인 자는 제24조(정년보장 임용 교원의 정수)를 적용받지 않으며 정년보장 심사요건은 이 규칙 제18조 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 1.이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가목 및 제23조 제3항 제2호의 나목은 2000학년도 제2학기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적 용 기 준		
	전임강사-->조교수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
2000학년도 제2학기	200%	250%	350%
2001학년도 제1학기	(상동)	300%	400%
2001학년도 제2학기	(상동)	350%	450%
2002학년도 제1학기	(상동)	400%	500%

- 2.이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가목~다목은 2000학년도 제2학기 재임용 대상자부터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의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200%이상으로 한다.

	적 용 기 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0학년도 제2학기	200%	250%	250%	200%
2001학년도 제1학기	(상동)	300%	300%	(상동)
2001학년도 제2학기	(상동)	(상동)	350%	(상동)
2002학년도 제1학기	(상동)	(상동)	400%	(상동)
2002학년도 제2학기	(상동)	(상동)	450%	(상동)
2003학년도 제1학기	(상동)	(상동)	500%	(상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교수승진 최저 소요년수가 초과된 자의 승진심사는 제16조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이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제23조 제3항 제2호는 2003학년도 제1학기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당해년도에 승진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차 연도의 상향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2학년도 이후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은 경과조치 없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2.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은 현 직급에서 한번의 재임용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유보하고,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02학년도 이후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은 경과조치 없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8학년도 이전 승진 및 재임용 대상 교원은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하고, 2008학년도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 교원은 2007학년도 이전 연구실적은 개정 전 규칙을, 2007학년도 이후 실적은 개정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 중 2007년 8월3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2008년 신규임용자의 재계약임용은 (별표3)재계약임용 심사기준(3)을, 승진임용의 경우는 (별표2)승진임용 심사기준(3)을 적용한다.

2.제36조의2(성과급)은 2010년 3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9년 9월 1일 이후 재계약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2009학년도 이후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개정된 (별표3)재계약임용 심사기준(3), (별표2)승진임용 심사기준(3)을 적용한다. 다만, 이공계열의 경우는 2010년 3월 1일 이후 재계약임용 및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최저 소요년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개정 이전 4월과 10월에 승진한 전임교원은 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진 최저 소요년수가 1개월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대상이 되는 당해 3월과 9월에 승진 최저 소요년수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시행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심사대상 기간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시작되는 승진임용 및 재계약임용 심사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심사대상 기간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별표2] 승진임용 심사기준(4)를, 재계약임용 심사 대상자는 [별표3] 재계약임용 심사기준(4)를 적용한다.

부 칙

①이 시행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박사학위가 없는 교원의 전임강사 재직기간은 부교수 승진 최저 소요년수에 포함 한다.

부 칙

①이 시행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4조에 대한 경과조치)

1.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조교수 및 부교수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부교수로 재직 중인 박사학위 미소지 교원의 교수 승진 최저 소요년수는 7년으로 한다.

3.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조교수로 재직 중인 박사학위 미소지 교원의 부교수 승진 최저 소요년수는 6년으로 하되 교수 승진 최저 소요년수는 7년으로 한다.

부 칙

①이 시행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인문/사회/경영/법/예술/체육/건축분야의 대체인정학술지 목록과 편수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승진임용 심사기준(4) 연구영역의 컴퓨터공학과 이공계열 구분은 심사 대상기간이 2014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2014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는 변경된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신규임용심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14조 제2항과 [별표5]는 신규임용되는 전임교원부터 적용하되 연구업적물 인정기준은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제30조의3 제4항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당시 검소속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별표2], [별표3], [별지서식1] 및 [별지서식8] 개정내용은 2021.9.1.자 재계약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세부 사항은 [별지서식1] 5. 임용심사기준 및 심사 평정 적용 특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별표2], [별표3] 심사대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시작되는 승진임용 및 재계약 임용 심사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심사대상기간이 2025년 3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승진 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별표2] 승진임용심사기준(5)를 재계약임용 심사 대상자는 [별표3] 재계약임용 심사기준(5)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5.3.1.)

[별표2] 승진임용 심사기준 (신설 2007.3.1, 2009.3.1, 2009.9.1, 2011.9.1., 2012.3.1., 2013.3.1., 2015.3.1., 2016.3.1., 2016.10.1., 2018.4.1., 2021.3.1., 2022.3.1., 2023.7.1., 2025.3.1.)

승진임용 심사기준(1) (삭제 2022.3.1.)

승진임용 심사기준(2) (삭제 2022.3.1.)

승진임용 심사기준(3) (삭제 2022.3.1.)

승진임용 심사기준(4)

구분	2013년 3월 이후 승진임용 심사기준			비고
교육 영역	소요기간 내 매학기 교육영역 평가 점수 26점 이상			
연구 영역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정교수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A	국제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국제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B	국제저명학술지 188점 × 직급별 재직년수	국제저명학술지 188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C	국제저명학술지 150점 × 직급별 재직년수	국제저명학술지 150점 × 직급별 재직년수	
	-특기사항 8)에 해당하는 기 승인된 업적물이 해당 계열 승진임용 심사기준 점수 대비 부교수 승진은 75% 이상, 교수(정교수) 승진은 80% 이상 제출되어야만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부 심사(2차) 평정을 할 수 있다.			

* 특기사항

- 1) 국내저명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 2) 국제저명학술지 : SSCI, A&HCI, SCI, SCI-E, SCOPUS(이공계열은 제외)
- 3) 승진임용 심사기준 연구영역 점수의 최소 50%는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4) 인문사회/예술체육/건축 분야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심사시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편 이상,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심사시 부교수 승진 이후에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진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 5) 인문사회/예술체육/건축 분야 중 국제저명 학술지에 게재가 현저히 곤란한 학과(분야)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및관리규정 [별지2]의 대체인정 학술지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심사시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2편이상,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심사시 부교수 승진 이후에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2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진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6) 논문대체 (변경 2016.10.1.,2018.4.1., 2022.3.1., 2023.7.1.)

항목	적용계열	대체비율	적용일 및 적용조건
산학협력 실적 (특허,기술료수입, 간접비,산업자문, 창업)	전계열	30%	2011. 9. 1 ~ 2015.2.28
		100%	2015. 3. 1 이후
저서	전계열(자연과학/공학계열제외)	100%	2015. 3. 1 이후 전문학술저서, 전문학술번역서(book chapter 논문모음 포함)
	자연과학	50%	
	공학	0%	
공연·발표	예술학부	100%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독창회, 독주회, 개인작곡 발표회를 해야 함.
설계·디자인·전시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과 멀티디자인학과	100%	
공연·발표·대국	바둑학과	100%	
설계·디자인·전시	건축	70%	가중치 105점 이상의 업적에 한함.
문학작품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30%	2012. 3. 1 ~ 2015.2.28
		100%	2015. 3. 1 이후
※ 공통사항 : 적용일 이전 실적은 대체 인정되지 않음 ※ 대체비율이 100%인 항목은 특기사항 4), 5)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7) 계열구분은 다음과 같다. (변경 2016.10.1.,2018.4.1., 2023.7.1.)

계열		대학(원)/학부/학과
인문사회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방목기초교육대학, 미래융합대학
이공	A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B	식품영양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공학과, 반도체공학과
	C	수학과, 교통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예술체육		디자인학부, 바둑학과, 예술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
건축		건축대학
기타		그 밖의 교원(대학원, 특수대학원, 산학협력단 등)과 특수한 경우(소속학과와 계열이 상이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계열에 준하여 구분함.

8) 승진임용 심사시 업적물 제출기한 (변경2021.3.1., 신설2021.3.1.)

승진 임용시기	업적물 제출마감일	인정 업적물
3월 1일자	전년도 9월 30일	가. 기 승인된 업적물 나. 게재 확정이 명시된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가 있는 게재확정업적물, 다만 게재예정증명서 인정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업적물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승진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평가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내저명학술지: 승진임용일 전일까지 출판되어야 함. 2) 국제저명학술지: 업적물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게재 예정증명서(Accept Letter 포함)의 업적물에 대하여 승진 임용일 이후 출판되어도 인정함. 다만, 인정된 업적물은 차회 재계약 또는 승진시 재사용할 수 없음.
9월 1일자	당해연도 3월 31일	다.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와 함께 제출된 게재확정업적물은 향후 게재(출판,발표)시 제출된 업적물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수정 사항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업적물(게재확정업적물은 심사시 제출된 업적물) 중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는 업적물은 승진임용연구업적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증 결과 연구윤리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승진임용 심사기준(5)

구분	2025년 3월 이후 승진임용 심사기준			비고
교육 영역	소요기간 내 매학기 교육영역 평가 점수 26점 이상			
연구 영역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정교수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70점 × 직급별 재직년수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70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A	국제저명학술지 270점 × 직급별 재직년수	국제저명학술지 270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B	국제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국제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C	국제저명학술지 180점 × 직급별 재직년수	국제저명학술지 180점 × 직급별 재직년수	
	-특기사항 8)에 해당하는 기 승인된 업적물이 해당 계열 승진임용 심사기준 점수 대비 부교수 승진은 75% 이상, 교수(정교수) 승진은 80% 이상 제출되어야만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부 심사(2차) 평정을 할 수 있다.			

*** 특기사항**

- 1) 국내저명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 2) 국제저명학술지 : SSCI, A&HCI, SCIE, SCOPUS(이공계열은 제외)
- 3) 승진임용 심사기준 연구영역 점수의 최소 50%는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4) 인문사회/예술체육/건축 분야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심사시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편 이상,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심사시 부교수 승진 이후에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진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 5) 인문사회/예술체육/건축 분야 중 국제저명 학술지에 게재가 현저히 곤란한 학과(분야)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및관리규정 [별지2]의 대체인정 학술지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심사시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2편이상,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심사시 부교수 승진 이후에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2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진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6) 논문대체

항목	적용계열 및 학부·학과·전공	대체비율	적용일 및 적용조건
산학협력 실적 (특허, 기술료 수입, 간접비, 산업자문, 창업)	전계열	100%	
저서	전계열	100%	전문학술저서, 전문학술번역서(book chapter 논문모음 포함)
공연·발표	아트앤멀티미디어 음악학부 공연예술학부	100%	건반음악전공, 보컬뮤직전공, 작곡전공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독창회, 독주회, 개인작곡 발표회를 해야 함.
설계·디자인·전시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과 멀티디자인학과, 건축	100%	건축대학은 가중치 105점 이상의 업적에 한함
문학작품	문예창작학과	100%	
※ 공통사항 : 적용일 이전 실적은 대체 인정되지 않음 ※ 대체비율이 100%인 항목은 특기사항 4), 5)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7) 계열구분은 다음과 같다.

계열	대학(원)/학부·학과·전공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경영대학, 방목기초교육대학, 미래융합대학,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이공	A 화학·에너지융합학부(화학나노학전공, 융합에너지학전공) 융합바이오학부(시스템생명과학전공), 화공신소재공학부(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스마트인프라공학부(환경시스템공학전공)
	B 융합바이오학부(식품영양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반도체공학부
	C 스마트인프라공학부(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예술체육	스포츠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건축	건축대학
기타	그 밖의 교원(대학원, 특수대학원, 산학협력단 등)과 특수한 경우(소속과 계열이 상이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계열에 준하여 구분함.

8) 승진임용 심사시 업적물 제출기한

승진 임용시기	업적물 제출마감일	인정 업적물
3월 1일자	전년도 9월 30일	가. 기 승인된 업적물 나. 게재 확정이 명시된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가 있는 게재확정업적물, 다만 게재예정증명서 인정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업적물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승진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평가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내저명학술지: 승진임용일 전일까지 출판되어야 함. 2) 국제저명학술지: 업적물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의 업적물에 대하여 승진임용일 이후 출판되어도 인정함. 다만, 인정된 업적물은 차회 재계약 또는 승진시 재사용할 수 없음. 다.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와 함께 제출된 게재확정업적물은 향후 게재(출판, 발표)시 제출된 업적물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수정사항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업적물(게재확정업적물은 심사시 제출된 업적물) 중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는 업적물은 승진임용연구업적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증 결과 연구윤리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9월 1일자	당해연도 3월 31일	

9) 학과·학부·전공별로 승진임용 심사기준 이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재계약임용 심사기준 (신설 2007.3.1, 2008.3.1, 2009.3.1, 2009.9.1, 2011.9.1, 2013.3.1, 2015.3.1, 2016.3.1, 2016.10.1, 2018.4.1, 2019.1.1, 2023.7.1, 2025.3.1.)

재임용 심사기준(1) (삭제 2015.3.1.)

재계약임용 심사기준(2) (삭제 2015.3.1.)

재계약임용 심사기준(3) (삭제 2022.3.1.)

재계약임용 심사기준(4)

구분	2013년 3월 이후 재계약임용 심사기준			비고
교육 영역	소요기간 내 매학기 교육영역 평가 점수 26점 이상			
연구 영역	구분	신규임용 후 첫 번째	이후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 80%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A	국제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 80%	국제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B	국제저명학술지 188점 × 직급별 재직년수 × 80%	국제저명학술지 188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C	국제저명학술지 150점 × 직급별 재직년수 × 80%	국제저명학술지 150점 × 직급별 재직년수	
	가. 특기사항 6)에 해당하는 기 승인된 업적물이 해당 계열 재계약 임용 심사기준 점수대비 조교수는 65%이상, 부교수는 80% 이상 제출되어야만 재계약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건하여 세부 심사 (2차) 평정을 할 수 있으며, 미 충족시에는 재계약임용을 추천할 수 없다. 나. 신규임용 후 첫 번째 재계약 임용시에는 가. 항의 기 승인된 업적물 충족 여부 심사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특기사항

- 1) 국내저명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 2) 국제저명학술지 : SCI, SSCI, A&HCI , SCI-E, SCOPUS(이공계열은 제외)
- 3) 논문대체 (2018.4.1., 2022.3.1., 2023.7.1.)

항목	적용계열	대체비율	적용일 및 적용조건
산학협력 실적 (특허,기술료수입, 간접비,산업자문, 창업)	전계열	30%	2011. 9. 1 ~ 2015.2.28
		100%	2015. 3. 1 이후
저서	전계열(자연과 학/공학계열제 외)	100%	2015. 3. 1 이후 전문학술저서, 전문학술번역서 (book chapter 논문모음 포함)
	자연과학	50%	
	공학	0%	
공연·발표	예술학부	100%	
설계·디자인·전시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과 멀티디자인학과	100%	
공연·발표·대국	바둑학과	100%	
설계·디자인·전시	건축	70%	가중치 105점 이상의 업적에 한함.
문학작품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30%	2012. 3. 1 ~ 2015.2.28
		100%	2015. 3. 1 이후
※ 공통사항 : 적용일 이전 실적은 대체 인정되지 않음			

4) 계열구분은 다음과 같다. (변경 2016.3.1., 2016.10.1., 2018.4.1., 2023.7.1.)

계열		대학(원)/학부/학과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방목기초교육대학, 미래융합대학
이공	A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B	식품영양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공학과, 반도체공학과
	C	수학과, 교통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예술체육		디자인학부, 바둑학과, 예술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
건축		건축대학
기타		그 밖의 교원(대학원, 특수대학원, 산학협력단 등)과 특수한 경우(소속학 과와 계열이 상이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계열에 준하여 구분함.

5) 재계약임용 심사기준 연구영역 점수의 최소 50%는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호 변경 2015.3.1.)

6) 재계약임용 심사시 인정 업적물(변경 2019.1.1., 2021.3.1.)

가. 기 승인된 업적물

나.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 중 게재 확정이 명시된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가 있는 게재확정업적물

다.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마감일 : 학부·학과·전공 심사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부(과)심사 또는 단과대학심사 또는 본부교원심사에서 제출마감일을 교원인사위원회 때까지로 인정(요청)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게재예정증명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최종 심의할 수 있다.(변경 2025.3.1.)

- 라.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 인정으로 재계약 임용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업적물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재계약 임용을 취소한다.
- (1) 국내저명학술지: 재계약임용일 전일까지 출판되어야 함.
 - (2) 국제저명학술지: 재계약임용일 이후 출판되어도 인정함. 다만, 인정된 업적물은 차회 재계약시 재사용할 수 없음.
- 마.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와 함께 제출된 게재확정업적물은 향후 게재(출판, 발표)시 제출된 업적물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수정 사항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바. 제출된 업적물(게재확정업적물은 심사시 제출된 업적물) 중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는 업적물은 재계약 임용 연구업적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고의성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을 시에는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는다.

재계약임용 심사기준(5)

구분	2025년 3월 이후 재계약임용 심사기준			비고
교육 영역	소요기간 내 매학기 교육영역 평가 점수 26점 이상			
연구 영역	구분	신규임용 후 첫 번째	이후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70점 × 직급별 재직년수 × 80%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70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A	국제저명학술지 270점 × 직급별 재직년수 × 80%	국제저명학술지 270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B	국제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 80%	국제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	
	이공C	국제저명학술지 180점 × 직급별 재직년수 × 80%	국제저명학술지 180점 × 직급별 재직년수	
	가. 특기사항 6)에 해당하는 기 승인된 업적물이 해당 계열 재계약 임용 심사기준 점수대비 조교수는 65%이상, 부교수는 80% 이상 제출되어야만 재계약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전하여 세부 심사 (2차) 평정을 할 수 있으며, 미 충족시에는 재계약임용을 추천할 수 없다. 나. 신규임용 후 첫 번째 재계약 임용시에는 가. 항의 기 승인된 업적물 충족 여부 심사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특기사항

- 1) 국내저명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 2) 국제저명학술지 : SSCI, A&HCI, SCIE, SCOPUS(이공계열은 제외)
- 3) 논문대체

항목	적용계열 및 학부·학과·전공	대체비율	적용일 및 적용조건
산학협력 실적 (특허, 기술료 수입, 간접비, 산업자문, 창업)	전계열	100%	
저서	전계열	100%	전문학술저서, 전문학술번역서(book chapter 논문모음 포함)
공연·발표	아트앤멀티미디어음악학부 공연예술학부	100%	건반음악전공, 보컬뮤직전공, 작곡전공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독창회, 독주회, 개인작곡 발표회를 해야 함.
설계·디자인·전시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멀티디자인학과, 건축	100%	건축대학은 가중치 105점 이상의 업적에 한함
문학작품	문예창작학과	100%	
※ 공통사항 : 적용일 이전 실적은 대체 인정되지 않음 ※ 대체비율이 100%인 항목은 특기사항 4), 5)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4) 계열구분은 다음과 같다.

계열		대학(원)/학부·학과·전공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경영대학, 방목기초교육대학, 미래융합대학,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이공	A	화학·에너지융합학부(화학나노학전공, 융합에너지학전공) 융합바이오학부(시스템생명과학전공), 화공신소재공학부(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스마트인프라공학부(환경시스템공학전공)
	B	융합바이오학부(식품영양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반도체공학부
	C	스마트인프라공학부(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예술체육		스포츠·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건축		건축대학
기타		그 밖의 교원(대학원, 특수대학원, 산학협력단 등)과 특수한 경우(소속과 계열이 상이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계열에 준하여 구분함.

5) 재계약임용 심사기준 연구영역 점수의 최소 50%는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6) 재계약임용 심사시 인정 업적물

가. 기 승인된 업적물

나.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 중 게재 확정이 명시된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가 있는 게재확정업적물

다.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마감일 : 학부·학과·전공 심사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부·학과·전공심사 또는 단과대학심사 또는 본부교원심사에서 제출마감일을 교원인사위원회 때까지로 인정(요청)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게재예정증명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최종 심의할 수 있다.

라.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 인정으로 재계약 임용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업적물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재계약 임용을 취소한다.

(1) 국내저명학술지: 재계약임용일 전일까지 출판되어야 함.

(2) 국제저명학술지: 재계약임용일 이후 출판되어도 인정함. 다만, 인정된 업적물은 차회 재계약시 재사용할 수 없음.

마. 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포함)와 함께 제출된 게재확정업적물은 향후 게재(출판,발표)시 제출된 업적물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수정 사항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바. 제출된 업적물(게재확정업적물은 심사시 제출된 업적물) 중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는 업적물은 재계약 임용 연구업적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고의성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을 시에는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는다.

7) 학과·학부·전공별로 승진임용 심사기준 이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4] 교수 연구영역 최소기준 (신설 2013.3.1., 변경 2015.3.1., 2016.1.1., 2016.3.1., 2021.1.1., 2022.3.1., 2023.3.1., 2025.3.1.)

교수 연구영역 최소기준

구분	교수 I (1~10년차)	교수 II (11년차 이상)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10점/년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120점/년
이공A	국제저명학술지 210점/년	국제저명학술지 120점/년
이공B	국제저명학술지 175점/년	국제저명학술지 100점/년
이공C	국제저명학술지 140점/년	국제저명학술지 80점/년

*** 특기사항**

- 1) 승진임용 심사기준(4)에 명시된 특기사항 1) ~ 2)를 따름. 다만, 특기사항 7)계열 구분에서 인문사회 계열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저서로, 예술체육과 건축계열의 경우에는 공연·발표·대국, 설계·디자인·전시로 대체 가능함.
- 2) 업적대체
 - 가. 교수 I (1~10년차)
 - ①기준점수의 5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저서로 대체 인정 가능
 - ②기준점수의 50%이상 책임저자 이어야 함.
 - 나. 교수 II (11년차 이상)
 - ①이공계열의 경우 국내저명학술지로, 전계열의 경우 저서로 대체 인정 가능
 - ②책임저자 1편 이상이어야 함.
- 3) 교수 2년차 이하와 만63세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영역 최소기준 미충족에 따른 제한 사항을 면제함. 다만 만 63세 이상의 교원에 대한 면제 적용은 2026년부터는 만 61세, 2028년부터 만 62세, 2030년부터 만 63세로 한다.
- 4) 미충족에 따른 제한 사항
 - 가. 교내연구비 신청 제한
 - 나. 연구년 신청 제한. 단, 교수연구년제에관한규정 제5조(연구년 신청·허가) 제3항2호다목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다. 책임시간 추가

구분	기준 점수 (3년 총합) 대비 100%미만~80%이상	기준 점수 (3년 총합) 대비 80%미만~50%이상	기준 점수 (3년 총합) 대비 50%미만
연간 추가 내역	1시간	2시간	3시간

라. 성과급, 교원성과상여금 등 별도의 성과 관련 수당 지급 시 지급 제한

- 5) (삭제 2025.3.1.)

[별표 5] 타 대학 재직 연수 경력 인정 기준 및 연구업적물 인정 기준 (신설 2021.1.1., 2022.3.1., 2025.3.1.)

타 대학 재직 연수 경력 인정 기준 및 연구업적물 인정 기준

구분	기준 내용	비고
1. 타 대학 재직 연수 경력 인정 기준	가. 타 대학 경력은 학기 단위로 인정하되 우리 대학교 일반교원 동일 직급 경력만 인정한다. 나. 제14조(자격요건) 제1항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 연수에서 우리 대학교 재직 연수를 제외한 잔여 연수만큼 타 대학 재직 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합산한다. 다. 상기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조기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학부·학과·전공 관련 대학외 기관의 경력 인정 여부는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2. 타 대학 연구업적물 인정 기준	가. 상기 인정 기준 나번의 잔여 연수에 해당하는 타 대학 재직 연수에 해당하는 연구업적물을 대상으로 하되 가장 최근 학기부터 적용한다. 나. 교수업적 평가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 [별표 2-1] 교수업적자체평가표(연구영역)에 해당하는 업적물만 인정한다. 다만 논문영역의 자체평가보고서와 강의 평가 및 저서영역은 제외하되 문학작품만 인정한다. 다. [별표 2]승진임용 심사기준(4) 특기사항 4)~5)의 연구업적물은 우리 대학교 신규임용 이후 승인된 업적물만 인정한다. 라. 그 밖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교수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산학협력영역 업적물 불인정

[별지서식1] 일반교원용(학부·학과·전공/단과대학) (변경 2019.1.1., 2021.3.1., 2022.3.1., 2025.3.1)
(재계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평가 대상자	학부·학과 ·전공		직급		성명	
평가 기간			-			
I. 임용심사요건 충족 여부 심사(1차)						
구분	기준점수	취득점수			충족 유무	비 고
		기 승인 인정점수	예정 점수	소계		
연구 영역	점 이상				충족 / 미충족	임용심사요건 미충족 시 채계약(승진) 임용 비추천
교육 영역	매학기 26점 이상	학기 충족(총 학기)			충족 / 미충족	
※기 인정점수 : 기 승인된 업적물 점수 / 예정 점수 : 게재 예정인 업적물 점수 ※연구영역과 교육영역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임용심사요건 충족 대상으로 세부 심사를 진행함. ※다만, 연구영역 충족 점수에 해당하는 게재확정업적물 중 미제출된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원인사위원회 때까지 제출·인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결이 된 경우에는 세부 심사(2차)를 평정할 수 있다.						
II. 임용심사요건 충족 대상자 세부 심사(2차)						
※ 교원심사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영역(5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평가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		
1.1 연구업적(1) - 연구업적 최소기준 충족		45				
1.2 연구업적(2) - 연구업적 최소기준 초과 유무		0~5				
2. 교육 영역(5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평가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		
2.1 교육 능력 - 강의 평가 - 강의 성실성	강의 평가	14~25				
	책임시간 준수 여부	0~10				
	수업계획서, 성적입력 등 준수여부					
	포트폴리오 제출 여부					
	휴강에 따른 보강 여부					
2.2 교육 활동 - 대학(학과) 기여도 - 학생지도	학과(단과대학) 행정 제반 사항 지 연 또는 미이행 여부	0~15				
	학과 회의 불성실 및 불참					
	교원연수회 사유 없이 불참					
	학생 상담					
3. 교원 책무 (가·감점 : 최대 ±5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평가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		
3.1 복무 준수	징계, 주의·경고	-5~0				
	법정의무교육, 기타 복무규정 준수					
3.2 상훈	훈·포장 및 표창 공적	0~5				
4. 기타 (가점 : 최대 5점 / 기본점수 : 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		
4.1 교육의 장래성, 인성 등		0~5				
평가 점수 합계					추천 / 비추천	
채계약 임용 70점 이상, 승진임용 80점 이상						

평가위원

직급 :

성명 :

㉠

※교원 심사 항목별 평가 기준

I. 임용심사요건 충족 여부 심사(1차)

- 승진임용 : 기 승인된 업적물이 해당 계열 승진임용 심사기준 점수 대비 부교수 승진은 75% 이상, 교수(정교수) 승진은 80% 이상 제출되어야만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부 심사(2차) 평정을 할 수 있다.
- 재계약 임용 : 기 승인된 업적물이 해당 계열 재계약 임용 심사기준 점수 대비 조교수는 65% 이상, 부교수는 80% 이상 제출되어야만 재계약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부 심사(2차) 평정을 할 수 있으며, 미 충족시에는 재계약임용을 추천할 수 없다.

II. 임용심사요건 충족 대상자 세부 심사(2차)

1. 연구 영역 (배점 50점 만점)

1.1 연구업적(1) 연구업적 최소기준 충족 : 연구영역(업적) 임용심사기준 최소 점수 충족에 따른 평가점수로 기본 점수 임. (45점)

1.2 연구업적(2) 연구업적 최소기준 초과 유무

- 연구업적 최소기준 점수를 초과한 연구업적 초과 점수 비율에 따라 배점 점수를 부여한다. (0~5점)

초과점수 비율	평가점수	평가 기준 및 방법
150%이상	5	■ 대상자별 임용심사기준 연구영역 기준점수 대비 총 취득점수 비율(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신규임용 후 첫 번째 재계약 임용의 경우에는 5점을 부여 한다.
140이상~150%미만	4	
130%이상~140%미만	3	
120%이상~130%미만	2	
100%초과~120%미만	1	
100%	0	

2. 교육 영역 (배점 50점 만점)

- 강의 평가를 제외한 항목은 최고 배점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항목별 미준수 시 감점·합산하여 최종 배점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및 방법
2.1 교육 능력 - 강의 평가 - 강의 성실성	강의 평가	14~25	■ 아래의 ‘강의 평가 항목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책임시간 준수 여부	0~10	미준수시 학점당 3점 감점 * 폐강으로 인한 책임시수 미달은 제외한다.
	수업계획서, 성적입력 등 준수 여부		미준수시 1건당 1점 감점
	포트폴리오 제출 여부		미준수시 과목당(분반별) 2점 감점(건별)
	휴강에 따른 보강 여부		미준수시 과목당(분반별) 2점 감점(건별)
2.2 교육 활동 및 학생지도 - 대학(학과) 기여도 - 학생상담	학과(단과대학) 행정 제반 사항 지연 또는 미이행 여부	0~15	미이행시 건별 1점 감점 * 객관적 증빙 필요
	학과 회의 불성실 및 불참		사유 없이 불참시 건별 1점 감점 (불성실은 2건당 1점 감점) * 객관적 증빙 필요
	교원연수회 사유 없이 불참		불참시 건별 1점 감점
	학생 상담		30회/학기 미만시 1점 감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에 한함) 심사평정 진행 학기는 제외

- 강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강의 평가 점수	환산 점수	강의 평가 점수	환산 점수	평가 기준 및 방법
90점초과	25	78점초과~80점이하	19	■ 강의 평가 점수가 완료되지 않은 학기 제외. ■ 강의 평가의 평가 점수는 매 학기 강의 평가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심사 학기로 나누어 산출 된 점수로 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88점초과~90점이하	24	76점초과~78점이하	18	
86점초과~88점이하	23	74점초과~76점이하	17	
84점초과~86점이하	22	72점초과~74점이하	16	
82점초과~84점이하	21	70점초과~72점이하	15	
80점초과~82점이하	20	70점이하	14	

3. 교원 책무 (가·감점 : 최대 ±5점)

구분		항 목	배점	평가 기준 및 방법
3.1 복무 준수	징계, 주의·경고	정직(재계약 임용만 해당)	-4	건당 해당 배점점수 감점 (합산 최대 감점 : -5점) *법정의무교육 - 청탁금지법 교육, 폭력 예방 교육, 장 애인 인식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감봉(재계약 임용만 해당)	-3	
		견책(재계약 임용만 해당)	-2	
		주의·경고	-1	
	법정 의무교육, 기타 복무 규정 준수	법정 의무교육 준수 여부	-1	
		연구윤리 위반	-2	
		승진 유보 및 탈락	-1	
3.2 상훈	훈·포장 및 표창 공적	기타 복무 규정 미준수	-1	건당 해당 배점점수 가점 (합산 최대 가점 : 5점) - 장기근속상은 제외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3	
		관할청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이사장 또는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1	

4. 기타 (가점 : 최대 5점 / 기본점수 : 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기준 및 방법
연구 및 교육의 장래성, 인성 등	0~5	정성평가 가점 영역으로 감점은 없음. 심사위원들 합의하에 가점기준을 정하고 가점 내용을 구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한다. (예시: 학과(단과대학)별 연구업적 기준 충족시 3점 가점 부여하기로 합 의함.)

5. 임용심사 기준 및 심사 평정 적용 특례 :

가. 임용심사 기준(연구영역)

- [별표2]과 [별표3]의 기 승인업적물 심사기준은 2023. 9. 1자 재계약 및 승진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나. 교육영역

- 2.1 교육 능력 항목의 포트폴리오 제출 여부 항목과 2.2 교육 활동 항목은 2021학년도 1학기 이전 실적에 대한 감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 가감점 영역

- 3. 교원 책무 항목은 2021학년도 1학기 실적부터 반영한다.

[별지서식2] 교양교수용(학부/단과대학/본부심사용) - 2010. 9. 1. 이전 심사기준 적용자

(재계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삭제 2016.10.1.)

[별지서식3] 교양교수용(학부(과)/단과대학/본부심사용) - 2011. 8. 31. 이전 심사기준 적용자
(재계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삭제 2016.10.1.)

[별지서식4] 교양교수용(학부(과)/단과대학/본부심사용) - 2011. 9. 1. 이후 심사기준 적용자
(재계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삭제 2016.10.1)

[별지서식5] 전문교수용(학부(과)/단과대학/본부심사용)- 심사대상 기간이 2011. 8. 31. 이전 개시 교원

(재계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삭제 2016.10.1.)

[별지서식6] 학부소속 전문교수용(학부(과)/단과대학/본부심사용)- 심사대상 기간이 2011. 9. 1. 이후개시 교원

(재계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삭제 2016.10.1.)

[별지서식7] 대학원 소속 전문교수용(대학원 전공/소속 대학원/본부심사용)

(재계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삭제 2016.10.1.)

[별지서식8] 일반교원용(학부·학과·전공/단과대학) (변경 2019.1.1., 2021.3.1., 2025.3.1.)

(재계약 · 승진)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

평가 대상자	학과(부)		직급		성명	
현재 평가 기간						

평가영역 평가위원	연구 영역		교육영역		교원 책무		기타		계(100)
	연구업적(1)	연구업적(2)	교육능력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복무준수	상훈	장래성, 인성 등		합계
A									
B									
C									
D									
E									
F									
G									
H									
I									
J									
중 합 의 견 :									

* 심사위원은 무기명으로 기재 / 대외비 처리 요망

20

심사위원장 : (인)

[별지서식9] 교양교수용(학부(과)/단과대학/본부심사용) -2010. 9. 1. 이전 심사기준 적용자

(재계약 · 승진)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삭제 2016.10.1.)

[별지서식10] 교양교수용(학부(과)/단과대학/본부심사용) - 2011.8.31. 이전 및 2011.9.1.이후 심사기준 적용자

(재계약 · 승진)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삭제 2016.10.1.)

[별지서식11] 전문교수용(학부(과)/단과대학/본부심사용 및 대학원 전공/소속 대학원/본부심사용)

(재계약 · 승진)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삭제 2016.10.1.)